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이제부터 시작이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일부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나자 산재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 점을 들어 법의 처벌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떤 법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안전보건체계의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 질문조차 건너뛰고 있다.

### 입법 효과 논하기엔 아직 일러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간과된 안전보건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이나, 가슴기 살균제 사건 같은 무책임한 이윤추구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참사에 기존 법제도를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정서에 기반한 것이 중처법이다.

제정 취지가 명시하고 있듯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의 법에 대해 아직 단 한 건의 사법처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처벌법의 예방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기업의 안전보건 상 무책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처벌의 칼날이라도 집행자가 휘두를 생각이 없음을 안다면 두려울 리 없고,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칼집에 꽂혀 있어도 가히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 사회적 쟁점 형성과 문제의식 증대의 효과

중처법이 가져온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당히 상향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여 사망재해에 대해 형량범위를 높였고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처벌하여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서도 안타까운 개인적 사연 위주의 취재에서 벗어나 안전보건 관리 상의 문제로 인한 중처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양한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실질적인 기업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고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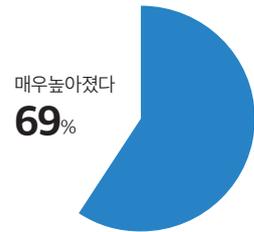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지난 2022년 국내기업 367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도 의미가 있다. 법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고, 안전 관련 예산의 변화는 70.6%가 ‘증가’했고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83.8%, 중견기업(300~999인) 78.3%, 중소기업(50~299인) 67.0%가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 진정한 자율규제가 실현되려면

기업과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의 안전보건 규제 행정에서 정교한 제도 구성과 빈틈없는 집행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원칙 없는 규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독려보다는 규제 회피를 위해 제도의 허점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제 기업에서도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찾기보다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에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을 방도나 규제 완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과 산업계의 산재 예방 활동의 구체적 방향과 사례를 제시하고 합리적 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규제 완화가 아닌 주체에 의한 규제로서 진정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다. 중처법 논의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

## 중처법 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 안전 관련 예산 변화

